

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(제5조 관련)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 - 가.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·유지의 지원
 - 나. 사무실 신·개축 및 보수의 지원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 - 가. 사무·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
 - 나. 사무실 집기·비품의 지원
 - 다.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
3.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
 - 가.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
 - 나.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·복지시설 설치의 지원
 - 다.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·유지의 지원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
 - 가.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의 지원
 - 1)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
 - 2) 차량·선박의 확보와 인원·물자 수송의 지원
 - 3)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
 - 4)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
 - 5) 개인 장구류 등 장비·물자 확보 및 유지
 - 나. 전투시설의 지원
 - 1) 진지구축 자재·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
 - 2) 무기고·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
 - 3) 관측소 및 점문소용 시설 지원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- 가. 예비군 후생·복지장구 확보의 지원
- 나.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·격려
- 다.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
- 라.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
- 마.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
- 바.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